

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. 12. 23 조례 제280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(이하 “동우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사업 등) ① 광명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2.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) 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정산보고 등)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기타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광명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